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21

발의연월일: 2021. 5. 24.

발 의 자:서삼석・이상헌・서영교

홍정민 • 윤재갑 • 김종민

강선우 • 윤미향 • 김영배

신영대 · 김영진 · 서동용

위성곤 · 김영주 · 김원이

임호선 • 이수진 • 최종유

윤준병 • 이용선 • 김철민

신동근 · 강병원 · 이개호

도종환 · 김승원 · 김정호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하지만 동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·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.

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

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는 신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.

따라서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·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·사 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고자 함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.

또한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도 신설코자 함(안 제3조의2).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보호, 지위 향상"을 "보호와 안전"으로, "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"을 "농어업의 발전, 농어 촌사회의 발전,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확 대"로 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성평등"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중 "개선 및"을 "개선,"으로, "향상을 위하여"를 "향상, 성평등의 증진, 근로·주거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" 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여성농어업인의 날)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.
 -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기본"을 "추진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정책과제"를 "정책과제와 추진방법"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시행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지원계획"을 "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사의회"로 한다.

라.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

마. 농어업·농어촌 성평등 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제6조제1항 중 "단체에"를 "단체, 전문가 등에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자문회의)"를 "(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"를 "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" 로, "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,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(이하 "자문회의"라 한다)"를 "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, 여성어업인육성정 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자문회의"를 각각 "심의회"로 한다.

- 1.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제1항 중 "실태 등"을 "실태, 성평등 실태 등"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"경영교육 및"을 "경영교육의 성인지적 추진 및"으로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귀농·귀어·귀촌 여성, 청년여성 및 다문화 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

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농어업·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

제1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여성농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) ① 국가

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여성농업인	제1조(목적)
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<u>보호, 지</u>	보호와
<u>위 향상</u> 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	<u> 안전</u>
개선,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	
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	
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	<u>농어업의 발전, 농어촌사회의</u>
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	발전,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
<u>전</u>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	및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확대-
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"성평등"이란 성별에 따른 차
	별,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
	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
	<u>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</u>
	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	무)
치적・경제적・사회적・문화적	
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	
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,	
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<u>개선 및</u>	<u>개선,</u>
삶의 질 <u>향상을 위하여</u> 종합적	<u>향상, 성평등의 증진, 근</u>

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 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 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 |

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 로 · 주거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 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-

- 제3조의2(여성농어업인의 날)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.
 -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 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 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-----

-----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 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 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·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 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 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 성어업인육성정책의 <u>기본</u> 방 향
- 3.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

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라.</u> (생 략)

- 4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<u>시행에</u>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지원계획
- ③ (생 략)

<u> 치도지사</u>
2
1. (현행과 같음)
2
<u>추진</u>
3 <u>정책과제</u>
와 추진방법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
<u>보</u>
마. 농어업ㆍ농어촌 성평등
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
<u>소</u>
<u>바.</u> (현행 라목과 같음)
4
<u>추진과 관</u>
런된 재원(財源)의 조달 및 운
<u>용방안</u>
③ (현행과 같음)

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 본계획 또는 시·도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 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 을 각각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 및 시·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농림축 산식품부령·해양수산부령 또 는 시·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

제6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저 협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 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·도계획 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밖의 법인 또는 <u>단체에</u>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자문회의) ①여성농업인육 저

(4)
여성농업인
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
인육성정책심의회
·.
제6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
협조) ①
단체, 전문가
등에
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

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 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소속하 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 의,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 의(이하 "자문회의"라 한다)를 각각 둔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<u>자문회의에는</u> 여성농업인육 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 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 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<u>자문회의</u>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

$\underline{\underline{\mathfrak{A}})} \ \underline{\mathbb{I}}^{}$
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하기
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,
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(이
<u>하 "심의회"라 한다)</u>
1.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
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
관한 사항
3.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
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
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
는 사항
② 심의회
③ 심의회
④ 심의회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<u>자문회의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 다.

제8조(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 저 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 략)

- 제9조(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 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,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

<u>심의회</u>
제8조(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
사 등) ①
<u>실</u> 태,
<u> 성평등 실태 등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
향상)
1
경영교육의 성인지적 추진

의 구축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5. (생략)

제10조(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략)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1조(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 자 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향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및	_	_	_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귀농·귀어·귀촌 여성, 청년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 력화 지원
- 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

제10조(여성농어업인의	지위	향
상) ①		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농어업·농어촌의 성별격차해소를 위한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
- ② (현행과 같음)

세	11조((여성	농어	업인의	모	성권	보
	장과	보육	여건	개선	및	삶의	질
	향상〉)				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u>5. · 6.</u> (생 략)

<신 설>

- 5.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
- <u>6.·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- 제11조의4(여성농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범 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.